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공고 제2026-102호

재산(예금) 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재산(예금) 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9. 17. ~ 2025. 9. 30.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압류금액	채납자 주소
1	배지훈	1981.○.24.	채권(예금)	₩5,067,360	부산 영도구 절영로 ○○
2	윤옥주	1976.○.11.	채권(예금)	₩4,267,500	충남 보령시 해태로 ○○
3	서금석	1959.○.25.	채권(예금)	₩4,357,500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
4	심혜림	1986.○.30.	채권(예금)	₩5,310,000	부산 사상구 양지로 ○○
5	유숙자	1949.○.12.	채권(예금)	₩12,600,000	부산 동구 자성로 ○○
6	김정숙	1959.○.20.	채권(예금)	₩19,116,000	경남 김해시 분성로 ○○
7	장효준	1970.○.27.	채권(예금)	₩1,290,000	경남 통영시 광도면 신죽2길 ○○
8	(주)착한떡	195511-0226782	채권(예금)	₩4,762,500	경남 김해시 가야로 199
9	(주)대영전기정보산업	180111-1089267	채권(예금)	₩5,572,500	부산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46, 2층
10	(합)지비알정보통신	180113-0016077	채권(예금)	₩19,034,440	부산 중구 대영로 235, 820호
11	(합)엠디크로우	180113-0016126	채권(예금)	₩29,278,710	부산 금정구 안뜰로7번길 45, 203호
12	(유)알앤디통신	180114-0009715	채권(예금)	₩29,736,000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99번길 1, 4층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압류금액	채납자 주소
13	파티마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181151-0005144	채권(예금)	₩6,562,500	부산 해운대구 중동1로 15-2, 3층
				₩26,250,000	
14	엄성열	1988.○.21.	채권(예금)	₩31,860,000	강원 속초시 중앙로 ○○
15	김금순	1959.○.05.	채권(예금)	₩31,860,000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변영로 ○○
16	유한회사 은경결혼정보	134614-0000397	채권(예금)	₩29,736,000	경기 안성시 대덕면 당뒤길 7, 104호
17	유한회사 효중엔지니어링	131314-0000742	채권(예금)	₩7,256,700	경기 평택시 팽성읍 안정로 45번길 33, 102호
18	정승우	1962.○.01.	채권(예금)	₩13,381,200	경북 영천시 북안면 방산길 ○○
19	천호진	1985.○.01.	채권(예금)	₩22,302,000	경북 경산시 압량읍 대학로○○
20	합자회사 탑글로벌	150113-0008210	채권(예금)	₩29,736,0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4번길 15
21	최길운	1962.○.14.	채권(예금)	₩3,345,3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6로 ○○
				₩13,275,000	
				₩5,31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22	전민표	1961.○.16.	채권(예금)	₩6,562,500	대구 북구 동북로 ○○
				₩26,250,000	

4. 문의: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7)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